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 충족 여부**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논산국토 2권역 소파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라. 개찰일시 : 2026. 8. 11. 13:00

마.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 : 299,970,000원)

추 정 금 액	465,984,990원(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금액)		
추 정 가 격	272,7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금액	166,014,990 원
부 가 세	27,2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금액	0 원

바. 공사 개요 : 포장도 보수공사(L=2,824km, B=3.5m)

- 소파보수(일반, B=3.5m, t=5cm) : 8,764㎡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일반, B=3.5m, t=5cm) : 1,120㎡

사.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므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제한합니다.**

아.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자.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차.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조건희(041-730-5833),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5. ~ 2026. 8. 11.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

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다음 각 기준 중 하나를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방법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입찰자가 **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 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마. 이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금245,376,882원**)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은 반드시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착공일까지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 다. 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e음 홈페이지(eum.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전조사

-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⑦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⑧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⑨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등) ⑩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⑪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⑫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서 ⑬근로계약서(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⑭소득금액증명서 ⑮기타서류(사무실 외관, 간판, 컴퓨터·팩스·책상 등 사무실 사무장비 사진 첨부) ⑯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서식)
-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6]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금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6.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5.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국도○○호선 ○○공사
계약상대자	상 호 및 대 표 자	(주)○○ 대표이사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계약내용	계 약 금 액	일금 ○억○천○백○만○천○백○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억○천○백○만○천○백○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금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_____
○ 주 소 : _____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년 __월 __일

대표자 (성명)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발주처)은 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__년 __월 __일

(성명)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있어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